

August 07, 201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4. 12. 31. 공포, 2016. 1. 1. 시행. 이하 “환경피해구제법”)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5. 7. 31.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들 하위법령은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와 의무배상 가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환경피해구제법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해양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기타 환경오염피해 유발 위험이 높은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제17조),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제2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 제8조 및 별표3에서는 환경책임보험가입 대상시설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① 1천㎏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및 ③ 송유관 시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대상시설 기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중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69종의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는 등록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그 밖의 시설

①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80t 이상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②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m³ 이상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의 세분화

환경피해구제법 제7조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제4조는 고위험군인 가군, 중위험군인 나군, 및 저위험군인 다군으로 구별하고, 그 한도금액을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및 5백억원으로 책임배상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시행령 제정안 별표2 참조).

3.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한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경우, 그 최저 보장계약금액을 해당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가군의 경우 300억, 나군은 100억, 다군은 50억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시행령 제정안 제10조).

4.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기한

환경피해구제법은 2016. 1. 1.부터 시행되지만 의무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2016. 7. 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자는 2016. 6. 30.까지 환경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장계약증명서를 해당시설의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환경피해구제법 제15조는 피해자가 환경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정안 제5조 이하에서는 정보청구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정보제공·열람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구체화

오염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저장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해양시설 중 환경 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대상시설을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② 오염물질 저장시설 및 ③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로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 제정안 제3조).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 및 보험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고, 위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 | |
|--------------|------------------|-----------------------------|
| ● 김현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08 | E-Mail. hakim@shinkim.com |
| ● 김 홍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623 | E-Mail. hkim@shinkim.com |
| ● 정태혁 변호사 | TEL. 02 316 1769 | E-Mail. thchung@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